

제43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6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5)
2.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4.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5.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1)
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2)
7.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8.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10.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1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1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1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15.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8)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1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4)
1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2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2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2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2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상정된 안건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5) 3
2.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숨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3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4
4.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 4
5.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1) 4
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2) 4
7.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4
8.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4
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4
10.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4
1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4
1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
1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4
1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4
15.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98) 4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4
1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984) 4
1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4
2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4
2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4
2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4
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4
2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5
2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5

(16시42분 개의)

○위원장 권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청원, 법률안 및 추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5)

2.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16시43분)

○위원장 권철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달희 청원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달희 청원심사소위원장 이달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이신 양부남·정춘생 위원님과 함께 지난해 12월 23일 총 26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심도 있게 심사해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정책 의견을 소중히 받들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내놓으신 법안과 유사하여 입법 과정에서 한번 심사하고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윤호중 의원이 소개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다지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개정되어 해당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25조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재심 의와 가해자 조력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징계 재심의를 경찰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확정력을 가지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징계 양정을 번복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울러 행정처분 취소를 통한 구제 역시 제소기간 등의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원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회법 제125조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다만 경찰로 하여금 청원인에게 사건 경과 및 법적 한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원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하는 청원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경찰로 하여금 청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과 추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행안위에 복귀하셨는데 환영합니다.

○한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내내 왔다 갔다 합니까? 진득하게 좀 앉아 계세요.

○이달희 위원 행안위에 인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권철승 환영의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다음으로 법률안과 추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4.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5.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1)
 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2)
 7.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8.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10.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1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1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1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15.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8)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1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4)
 1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2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2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2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2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2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6시47분)

○위원장 권칠승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5항까지 23건의 법률안과 추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희·손명수·김승원·김영진·김종양·이상식·권칠승·허성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형두·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초광역특별계정 등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제명 및 법률에서 사용되는 ‘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일괄하여 변경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의 명칭 및 위촉위원 수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및 초광역특별계정 관련 규정 등의 자구를 정비하는 등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농복합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동을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환원되는 종전 읍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성권·이달희·성일종·박성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들을 폭넓게 구제하기 위하여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특례를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들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부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 양부남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서 195억 1500만 원 감액 의견과 116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1억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원안유지 의견과 7398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서 116억 1900만 원 증액 의견과 195억 15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지원에 261억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에 177억 3800만 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산 지원에 81억 8000만 원, 산불피해 추가지원 전담인력 지원에 11억 4000만 원, 햇빛소득마을 확산에 3억 3100만 원을 각각 신설·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증감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즉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철승 이해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소위의 양부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보니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95억 1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안 상정 때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감액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고용률이 지금 거의 22개월, 23개월째 하락 추세에 있고. 일반 실업률의 경우에 3%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8%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없음으로 쉬었음 청년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거의 1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6년 현재 지금 거의 75만, 80만 가까이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동전쟁으로 고물가·고유가로 인해서 생활고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 청년 계층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 11개 부처에서 약 10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예산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결국 사회연대경제, 특히 비수도권의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10인 미만의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깎는다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고 청년들의 굉장히 궁핍한 그리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결정이 아닌가…… 결정은 아니겠습니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떤 정치 논리로 바라보지 말고 그야말로 청년이 처한 매우 심각한 상황 이런 것을 액면 그대로 바라보고 이 예산을 전액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간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철승 이거는 이해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도 있었고 또 116억 원 증액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소위의 확정된 의견이라든가 상임위의 확정된 의견은 아니고 하나의 의견, 그러니까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제가 추가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진짜 이건 우리 정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청년일자리 많이 늘려야지요. 많이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추경은 전쟁추경이라고들 합니다. 정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입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 주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게 그 목적이냐 요건에 맞느냐……

아까 우리 소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다.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 사업을 벌이자고, 그때 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이 사업이 청년일자리 사업인지 아니면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사업인지 목적도 불명확하고요. 그리고 추경에 대한 그 요건이나 목적에도 안 맞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걸 말씀을 먼

저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더, 장관님께도 제가 확인을 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금 지역이나 소득 수준으로 이제 구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정말로 실제로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화물차라든지 택배라든지 푸드트럭이든지 이런 종사자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설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국비와 지방비 매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80 대 20으로 합나다만 지난번에는 우리 90 대 10으로 했거든요, 그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비수도권이냐 인구감소지역에 가면 갈수록 그쪽이 더 재정 여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수도권에 1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구감소지역이나 저런 데 가면 45만 원을 받고 60만 원 받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라면 더 많은 지방비가 부담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방에 부담이 안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든지 정부의 논리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가니 그걸로 충당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쓸 수 있지만 지방에 가능하면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걸 나누는 데 행정비용이 52억이 듭니다, 52억이.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 코로나 때나 민생쿠폰 지원 때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스템 구축해야 됩니다’ 하면서 한 오십몇 억씩, 90억 원씩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고 또 민생쿠폰 지급할 때 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52억을 들이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낭비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워낙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메모리 공간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상시 운영을 하려면, 지금 상시 운영을 하는 비용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만 임대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필요할 때 재구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대상을 선별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고유가로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고요.

또 대중교통……

○서범수 위원 그 최고가격제라는 것은 정유회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일단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결국은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을 막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지원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가격 통제를 하면서 또 수요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청년들의 일경험 사업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정부에 한 10만 명 정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부처 사업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연대경제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개 고용인 수가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다른 부처의 사업에서는 일경험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이 되기가 어려워서 우리 행안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연대경제는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MZ세대 구직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10명 중에 8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서 일해 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MZ세대들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와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4항은 전부개정법률안 및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하였고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라는 점에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금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12항과 전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24항은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만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부터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니다.

제정안의 제명부터 제7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정법안 부칙 및 별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의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정법안의 제명부터 제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정안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2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5항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4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계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추경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권칠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6건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시행되면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이 확대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함에 따라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서 추경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안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고동진 권철승 김성희 모경중 박덕흠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한병도

○청가 위원(3인)

신정훈 용혜인 주호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치혁신실장 진명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정책기획관 이지성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경찰청

감사관 고정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